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오 현 석\*

- 
- I. 서 론
  - II.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개념
  - III.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성립요건
  - IV.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효과
  - V. 시사점 및 결론
- 

주제어 : 사정변경원칙, 장애, Hardship, 계약준수의 원칙,  
CISG, PICC, PECL

### I. 서 론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sup>1)</sup> 그러나 일반적인

---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1)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리를 계약의 구속력과 관련된 일반원칙으로서 ‘계약충실의 원칙’ 또는 ‘계약준수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상대국의 정치상황 또는 경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문제, 나아가 국제성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행절차의 복잡성, 계약의 장기성 내지는 계속성이라는 문제들이 국제물품매매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특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에 이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계약준수의 원칙의 강조는 법적 확신과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의 타당성 문제는 확보할 수 있으나, 국제물품매매의 비효율성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제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제 및 이를 수용한 국내법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제안하고 있다.<sup>2)</sup>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불이행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을 요하게 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불이행 당사자 측면에서는 신의칙(good faith) 내지 형평(equilibrium)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함으로 그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성에 기반한 신의칙의 파생원칙 내지 분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sup>3)</sup> 즉, 계약의 이행은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원칙이 충돌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사정변경원칙은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각기 법계의 특징을 계수하여 다양한 형태의 용어 아래 다양한 법률 요건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sup>4)</sup> 연혁적으로는 교회법상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민법(ABGB, 1811) 및 스위스 채무법(OR, 1881)에서 명문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제1·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및 프랑스에서 발전된 행위기초론(Die

‘계약준수의 원칙’으로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사정변경원칙은 손주찬, “물가변동과 사정변경의 원칙 - 이대병원 매매사건에 즈음하여 -”, 법조 제6권 제7·8호, 법조협회, 1957에서 처음으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문 이후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도 ‘사정변경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p.36. 한편 사정변경원칙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원칙’이라는 용어보다는 법률해석 문제의 차원에서 ‘사정변경의 법리’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상현,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이론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p.485.
- 4) 사정변경과 관련된 용어로는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의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사정변경(change of circumstance)이 있다.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이나 불예견론(la théorie de l'imprévision)<sup>5)</sup> 및 영미에서 발전된 계약목적달성불능의 법리(the doctrine of frustration)<sup>6)</sup> 등의 논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규적 입법 가능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sup>7)</sup> 이는 현재 국제상거래법 체제에 일정한 형식으로 입법 내지는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8)</sup>

다만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기축점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에 따라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를 것이다.<sup>9)</sup>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sup>10)</sup>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sup>11)</sup>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

5) 이에 관하여는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 p.98 이하;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행위기초론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집, 법원행정처, 1974, p.67 이하 참조.

6) 이에 관하여는 김동훈,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인권과 정의 제244호, 대한변호사협회, 1996, p.96 이하 참조.

7) 2002년 개정된 독일 민법은 제313조에서 계약에 있어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8)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pp.44-53.

9) 박영복, "현대 계약법의 추이", 외법논집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p.55.

10) 오원석·심윤수, "「UNIDROIT Principles 2004」의 변경·신설내용의 개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2005, p.48.

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그 개념 설정, 성립 요건 및 적용 효과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CISG와 PICC 및 PECL과의 비교를 통해 그 법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CISG에서의 사정변경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국제성·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가 법적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무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개념

### 1. CISG

‘사정변경원칙’(change of circumstances)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실현의 기초로 된 일정한 사정(즉 행위기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급부 의무의 감소 또는 증가를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소(discharge)를 허용하는 법리를 의미한다.<sup>12)</sup>

CISG에서는 이러한 사정변경원칙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PICC나 PECL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면책조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CISG가 영미법의 면책주의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sup>13)</sup>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면책조항은 각각 제79조와 제80조의 내용이다. CISG 제79조에서는 특정 사정에 의하

---

11)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적용의 수순일 것이고, 국제상거래의 환경 속에서 현대계약법의 추이는 ‘계약준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정변경원칙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실무적 현실일 것이다.

12) 지원림, 민법강의, 제9판, 홍문사, 2011, p.49.

13) 최현숙,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Hardship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p.1030.

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행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CISG 제80조에서는 계약위반자의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sup>14)</sup> 제79조에 따른 면책은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무자가 계약상 인수한 위험에 귀속시킬 수 없는 근거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입한다.<sup>15)</sup> 따라서 제79조에 따른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그의 불이행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인수했는지 여부, 즉 위험의 배분이 본질적인 쟁점이 된다.<sup>16)</sup>

한편, CISG의 면책규정상 특이한 점은 ‘장애’<sup>17)</sup>(impedim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라는 용어는 대륙법계<sup>18)</sup>의 ‘이행불능’과 영미법계<sup>19)</sup>의 ‘계약목적달성불능’이라는 용어와 구별된다. CISG는 영미법계와 대륙

14) CISG상 사정변경 원칙과 관련된 면책은 전자일 것이다.

1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298.

16) 석광현, 상계서, p.298.

17) CISG 상 ‘장애’는 ULIS 제74조 제1항의 ‘상황(circumstances)’와 관련이 있다. 상황은 원거나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음을 입증할 때 면책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CISG 제정과정에서 ULIS 제74조의 상황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시도하였지만 당사자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쉽게 면책될 수 있음을 지적받아 CISG working group에서는 상황이라는 표현대신 장애라는 표현을 수용하였다. C.M. Bianca &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 · Milan, 1987, p.579.

18) 대륙법계에서 특히 독일은 1921년 Paul Oertmann이 행위기초론(die Lehre der Geschäftsgrundlage)이 사정변경원칙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독일은 행위기초론을 2001년 민법 개정 시 입법하였고 계약체결 후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있고 당사자가 그러한 변경을 예견하였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을 체결하였을 경우 1차적으로 계약내용의 수정청구를 허용하였다. 또한 2차적으로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수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19) 영·미법계에서 특히 영국은 현저한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경우 이를 불능으로 보아 채무자를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한 1863년 *Taylor v. Caldwell* 사건에서 계약체결 후 특정 사정변경에 따른 세 가지 채무자 면책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 조치가 발생한 경우, 이행을 위해 특정인이 존재해야 하는 경우 특정인의 사망 또는 행위무능력자가 된 경우, 이행을 위한 특정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정변경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급부가 절대적 불능은 아니지

법계의 통일적 소산이라는 특징과 법리의 해석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sup>20)</sup> 따라서 CISG 제79조 제1항에서는 장애에 대한 법적 용어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제불능성’, ‘예견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CISG 제79조상의 장애의 범위이다. 제79조의 장애는 불가항력의 범주에 속하지만 여기서의 불가항력은 천재지변(Act of God)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된다.<sup>21)</sup> 즉,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국한되는 것이고, CISG상에서의 장애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위적 현상도 포함하고 있다.<sup>22)</sup> 또한 이행에 대한 장애는 경제적 불능을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CISG 제79조는 불가항력 및 경제적 상황에 의한 이행불능을 장애의 개념으로 정립하여,<sup>23)</sup> 당해 불이행 당사자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정변경에 대해 면책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정변경의 내용 또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행당사자의 면책 또한 단순한 사전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불가항력에 상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만 이행불능(impracticability)이며, 둘째는 급부의 이행은 가능하지만 계약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이다.

- 20) 오원석·배준일, “면책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2001, p.4.
- 21)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force majeure는 act of god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한상현, “무역계약에서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제문제점과 대응책”, 무역상무연구 제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4, p.179.
- 22) 천재지변은 인간이 아무리 주의하여도 예측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진, 번개, 홍수, 화재, 폭풍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정치적 장애는 전쟁, 혁명, 폭동, 쿠데타, 파업 등이 해당된다. 법적 장애는 압류, 수출입금지조치, 외화이전금지,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등이 해당된다. 장애의 구분에 대해서는 서완석,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p.50 참조.
- 23) CISG는 장애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기위해 이행을 방해하는 객관적, 외부적 사유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장애가 자연적·사회적·정치적 원인의 장애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다만 불이행 당사자의 주관적·내부적 사정 및 법률의 착오는 CISG 제79조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해관·한병완,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면책규칙에 관한 일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2, pp.69-70.

## 2. PICC

PICC 제2편에서는 사정변경과 관련된 Hardship 조항을 두고 있다. 즉 PICC는 사정변경이라는 문구 대신에 단순하게 Hardship이라 표현하고, 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상의 형평성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라 정의한다.<sup>24)</sup> PICC는 Hardship에 대한 규정에 앞서 계약준수의 원칙을 먼저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Hardship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Hardship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sup>25)</sup>

PICC 제6.2.2조는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해야 하며,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야 하며, 이행가혹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며, 이행가혹당사자가 가혹사유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PICC는 사정변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변경에 대한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PICC에서는 사정변경원칙보다도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원칙임을 전제하고, 이에 사정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곧 사정변경도 계약의 형평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고, 달리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PICC상 사정변경은 계약의 형평성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시사한다.

24)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 국제거래와 민법이론 -*, 집문당, 2005, p.111. 고난, 고통, 곤란 등을 의미하는 hardship은 계약법상 이행곤란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원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5) Hardship은 영미법계의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과 대륙법계의 사정변경원칙을 포괄하는 법리이다. S.H. Jenkin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UCC, CISG UNIDROIT Principles- A Comparative Assessment", *Tulane law Review*, Vol. 72, 1998, p.2017.

26) 심종석, "국제계약규범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기준과 법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 CISG, PICC, PECL의 規定과 判決例를 중심으로 -", *법제연구* 제29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p.113.

### 3. PECL

PECL은 향후 제정될 유럽계약법전(European Code of Contracts)을 위한 법적기반의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범위는 순수한 국내계약 뿐만 아니라 상인과 소비자 간 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공히 적용된다.<sup>27)</sup> 요컨대, PECL은 유럽 역내 회원국 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국내계약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간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sup>28)</sup>

사정변경 원칙과 관련하여, PECL은 제6.111조에서 명문화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PICC와 동일하게 제1항에서는 계약준수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즉 당사자는 이행비용의 증가 또는 받은 이행의 가치의 감소로 인한 것이든 이행이 더욱 부담이 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다만 당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사정변경으로 급부가 현저히 부담스럽게 된 경우에 한하여<sup>30)</sup> 계약 내용을 사정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성립요건

### 1. CISG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ICC 또는 PECL은 Hardship이나 사정변경에 관련

---

27) 심종석, 전제논문, p.115.

28) 半田吉信 外 (共譯), ユルゲン・バセドウ (編), ヨーロッパ統一契約法への道, 法律文化社, 2004, pp.202-203.

29) 심종석·오현석, “유럽계약법원칙하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5, p.319.

30) PECL 제6:111조 (2)를 참조하면, ① 사정변경이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고, ②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계약체결 시에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③ 이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계약내용에 비추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닌 경우를 조건으로 당사자들은 계약을 수정(adapting) 혹은 해제(termination)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된 조항을 두고 있으나, CISG는 사정변경에 관련된 명문의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sup>31)</sup> 다만 CISG 제79조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규정은 마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 시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CISG에서는 사정변경 조항과 유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확대하여 사정변경원칙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CISG 제79조는 계약위반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CISG의 원칙 때문에 마련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한 채무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sup>32)</sup>

구체적으로 CISG 제79조 면책조항에 대한 요건으로는 ‘통제불능성’, ‘예견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 그리고 ‘통지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분설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장애

CISG는 사정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impediments) 발생에 따른 계약상 불이행에 대해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이행당사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의무불이행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고 볼 것인가이다. CISG상 장애라 함은 채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채무자의 본래의 위험영역, 책임범위 또는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sup>33)</sup> 특히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장애’는 당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sup>34)</sup> 만약 주관적 해석

31)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ranslated by Geoffrey Thomas), Oxford Univ. Press, 1998, p.685.

32) 법무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p.185.

33) 석광현, 전거서, p.300.

을 적용할 경우 상대방의 거래상 안전과 이익을 해하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장애’에 대한 객관적 해석은 불가항력 내지 원시적 불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장애에는 흔히 자연재해와 전쟁, 폭동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포함된다.<sup>35)36)</sup>

장애와 관련하여 면책의 사유는 일시적인 장애와 영구적인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CISG 제79조 3항은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일시적인 장애 및 향후 그러한 장애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다면 장애의 범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37)</sup> 한편 불가항력(force majeure; unforeseen event)은 외부로부터 발생한 장애의 사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사법상 책임 또는 채무 그리고 기타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 2) 예견·회피 불가능성

의무불이행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예견 불가능성이다. 만약 당사자가 예견이 가능하였다면 당사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견 가능성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피는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 불이행 당사자는 당해 장애가 회피하거나 극복하기에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sup>38)</sup> 여기서 문

34)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ranslated by Geoffrey Thomas), Oxford Univ. Press, 1998, p. 687.

35) 杉浦保友·久保田隆, ウィーン売買条約の実務解説, 中央経済社, 2009, p.301.

36) 여기에서 준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위험배분, 관행과 관례인데, 그 밖에는 유형화를 통하여 합리적 채무자의 전형적인 책임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 석광현, 전계서, p.301.

37) John O. Honnold,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p.617.

38) 법무부, 전계서, p.185-186.

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견불가능성’과 ‘회피불가능성’의 상호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 조 원문에서와 같이 예견불가능성과 회피불가능성은 “or”라는 결합에서 병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 가능하지만 회피 불가능한 사례와 예견 불가능하며 회피 불가능한 사례로 구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예견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당해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각자 업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향후 업계 상황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CISG 제8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이해했었을 바를 확정함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습, 관행 및 기타 당사자의 후속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된 ‘예견불가능성’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sup>39)</sup>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고 회피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예견할 수 없고 당사자가 장애에 대해서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동 장애에 대한 위험은 당해 당사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결국 계약 체결 시 당해 장애를 예견할 수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장애를 해결 또는 극복하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CISG 제79조 제1항의 당사자 책임의 면책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의미하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ISG 제79조 제1항에서 사정변경의 규정은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통해 그 엄격성이 완화되고 있다.

### 3) 통지의무

의무 불이행 당사자는 당해 장애사유와 그것이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통지에 있어서 의무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를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불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CISG 제79조 제4항이 통지의 분실이나 도

39) Peter Schlechtriem, *op.cit.*, p.688.

달의 지연의 위험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손해는 단지 상대방의 의존이익만을 전보할 뿐이다.<sup>40)</sup> 그러므로 이것은 CISG 제27조에 규정된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다.<sup>41)</sup>

## 2. PICC

PICC는 CISG에 비추어 보다 상세한 사정변경 원칙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Hardship 규정으로 대변되고 있다.<sup>42)</sup> 우선 PICC 제6.2.2조에 의하면 Hardship은 당사자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정이 발생될 때 성립한다.<sup>43)</sup> 또한 동시에 추가적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 일방에게 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hardship)에 관한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추가적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Hardship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발생을 계약체결 후에 알아야 한다. 둘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Hardship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Hardship의 사유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Hardship의 요건을 기본적 요건과 추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0) 김선국,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기업법연구 제13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p.232.

41) 김선국, 상계논문, p.233.

42) Peter Schlechtriem, *op.cit.*, p.689.

43) 계약이행에 있어서 Hardship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Hardship을 구성하는 사정변경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계약에게 미치는 결과 또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서정두, “국제조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에 대한 Hardship 조항의 활용,”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7, p.275.

44) 심종석, 전계논문, p.113.

## 1) 기본 요건

PICC는 사정변경이 계약균형의 화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Hardship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sup>45)</sup> 계약균형의 근본적 화해는 거래의 특징과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이행비용의 증가와 이행의 가치감소가 근본적 화해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가 Hardship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행비용의 현저한 증가, 예컨대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수출국의 국내법상 안전법규 내지 환경법규의 제정으로 새로운 제조공정을 적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sup>46)</sup>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계약의 이행을 지속시키는 경우 물품제공 의무자의 의무이행은 가혹하며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행비용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Hardship이 원용될 수 있다.

둘째, 일방이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에 현저한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입상이 지급받은 대금이 계약체결 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가치하락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입상의 손해가 가혹하므로 Hardship이 원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수출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 수출금지된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이행가치와 관련해서는 가치감소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2) 추가 요건

PICC는 Hardship의 기본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47)</sup>

첫째, Hardship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발생을 계약체결 후에 알아야 한다. 만약 계약체결 시에

45) PICC, Art. 6.2.2, Official Comment. p.184.

46) Id.

47) Id. p.185.

Hardship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동 요건은 원용될 수 없다.

둘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Hardship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어야 한다.

셋째, Hardship의 사유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될 수 없었던 통제 밖의 장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Hardship을 원용할 수 없을 것이다. 동 요건은 PICC 제7.1.7조의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sup>48)</sup>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넷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

### 3. PECL

PECL의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은 PICC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즉, PECL 제6:112조는 PICC와 같이, 계약준수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이후 사정변경원칙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 규정상의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sup>49)</sup> 즉 급부의 이행비용 증가 또는 반대급부 가치의 하락으로 급부의 부담이 증가된(more onerous) 경우에도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계약준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과도한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고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아 계약의 조정 또는 협상을 통한 해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PECL의 사정변경에 관한 요건을 PICC와 같이 기본적 요건과 추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8) PICC. Art. 7.1.7(1): "당사자가 그의 의무의 불이행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시에 그러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장애 또는 그러한 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49) 박영복, 전계서, p.182.

50) PECL Art. 6:111(1).

## 1) 기본 요건

PECL상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변경이 현저하게 과중된(excessively onerous) 경우이다. 따라서 계약을 변경시키는 ‘현저한 상황’을 사정변경의 근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급부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반대급부의 가치가 떨어져 급부가 전보다 ‘단순히’ 힘들게 된 경우에는 계약준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sup>51)</sup> 따라서 PECL의 법문에서 의미하는 ‘현저한 상황’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저한 상황의 변화의 범위는 PECL 제6:111조(1)의 조문을 참고할 때 현저한 비용의 증가 또는 가치의 현저한 하락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법적 구조의 큰 틀에서 보면, PECL상의 사정변경의 기본 요건은 PICC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 2) 추가 요건

PECL은 사정변경의 기본 요건과 더불어 추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PICC와 같은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PECL 제6:112조 (2)에서 제시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sup>52)</sup>

첫째, 사정의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즉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전 예견될 수 있는 사정변경은 그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계약체결 시에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담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정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변경된 위험을 감수한 이행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PECL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을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여 사정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있다.<sup>53)</sup>

51) 박영복, 전계서, p.182.

52) PECL Art. 6:112(2) (a)-(c).

## IV.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효과

### 1. CISG

#### 1)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CISG 제79조에서는 의무 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CISG 제79조의 면책은 그러한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진다.<sup>54)</sup> 이는 일시적 장애만을 면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주로 이행지체의 문제라 할 것이다.<sup>55)</sup> 따라서 장애가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후에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면책은 종료되며, 이행기가 도래한다.<sup>56)</sup>

한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불이행 당사자는 오직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면할 따름이다.<sup>57)</sup> 즉, 계약의 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의 해제 등 기타의 모든 구제는 여전히 허용된다.<sup>58)</sup> 다만 객관적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sup>59)</sup>

#### 2) 계약해제권

CISG는 계약유지 내지는 계약준수의 관점에서 계약해제권에 엄격한 요건을

---

53) 심종석·오현석, 전제논문, p.320.

54) CISG Art. 79(3).

55) 일시적 장애의 구체적인 예로는 기한부 수출금지나 기한부 외환이체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석광현, 전제서, p.315.

56) 법무부, 전제서, p.187.

57) CISG Art. 79(5).

58)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5판, 삼영사, 2005, p.164

59) 법무부, 전제서, p.187.



요구함으로써 계약해제권이 최후적인 수단으로 행사되도록 의도하고 있다.<sup>60)</sup> CISG 제79조 제5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조항으로,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책임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79조 제1항의 좁은 면책범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제79조 제5항에 따라 어느 일방의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은 손상되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CISG는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해제가 중대한 계약위반일 경우와 이행 추가기간 제시에 따른 불이행의 경우에 해당된다.<sup>61)</sup> 특히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란 당해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sup>62)</sup>

계약해제권의 효과에 대해서는 CISG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모두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또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계약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63)</sup> 또한 계약해제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모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동시반환을 원칙으로 한다.<sup>64)</sup>

60) 김봉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구제수단”, 경영법률 제20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p.334.

61) 한낙현, “국제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2010, p.76.

62) 예견가능의 시점에 관하여는 계약체결 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계약위반시에 예견하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p.133 이하 참조.

63) CISG, Art. 81(1).

64) CISG, Art. 81(2). 계약위반 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

CISG상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제외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되므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해제권의 발동에 의해도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과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은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sup>65)</sup> 이처럼 CISG가 손해배상의무와 분쟁해결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CISG상의 계약 해제권 자체에는 소급효가 없고 단지 장래를 향하여 당사자에게 청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66)</sup>

## 2. PICC

### 1) 재협상요구권

PICC는 Hardship의 발생으로 계약상의 형평성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시금 협상을 통하여 적합하게 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6.2.3조에서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67)</sup>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내용의 자동적 변경을 정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재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원래의 계약조건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변경시켜 계약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sup>68)</sup>

---

구하는 것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는 대륙법계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석광현, 전게서, p.372.

65) CISG, Art. 81(1) 단서.

66) 석광현, 전게서, p.323. 이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상 청산관계설과 유사한 것으로, 계약의 해제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직접효과설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고 판례는 직접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상용, 전게서, p.208 이하 참조.

67) PICC의 Hardship의 효과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법적 측면과 재협상의 결렬로 인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적 측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

68) 독일의 구민법하에서도 이러한 협상의무를 행위기초의 탈락으로 인한 주된 법적 효과로 인정하였고, 채권법 개정에서 이러한 행위기초론이 반영되었다. 박영복, 전게서, p.112.

한편, 재협상요구는 Hardship이 발생한 후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재협상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에게 이행보류권을 주지 아니한다.<sup>69)</sup> 그러나 재협상요구를 하여야 할 정확한 시기는 각 사안의 제반 상황에 따라야 할 사실의 문제이다. 나아가 재협상요구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재협상요구를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Hardship 사유가 명백하지 않는 불완전한 재협상요구는 재협상요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협상요구사유의 불명시의 효과는 부당하게 지체된 재협상요구에 의제된다.<sup>70)</sup>

결국 불리한 당사자가 재협상요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Hardship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Hardship의 존재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체법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sup>71)</sup>

## 2) 재협상의 결렬

계약 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재협상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및 재협상을 하였지만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sup>72)</sup>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교섭이 반드시 시도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당해 사항이 Hardship으로 인정될 경우 그 시기와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다.<sup>73)</sup>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공권력적 제재의 형태로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대부분 계약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급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계약을 변경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본다.

69) PICC Art. 6.23 (2).

70) 김승현, “국제건설계약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25권, 2005, p.24.

71) 배준일·오원석, 전계논문, p.59.

72) PICC Art. 6.23 (3).

73) PICC Art. 6.23 (4).

### 3. PECL

#### 1) 1차적 효과

사정변경원칙과 관련하여, PECL도 PICC와 거의 동일한 법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sup>74)</sup> 우선 PECL은 제6:111조 (1)항에서 계약준수의 원칙을 선언하고, (2)항에서 사정변경으로 당사자의 이행이 가혹할 때에 한하여, 당사자는 1차적으로 계약내용의 조정 또는 해소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75)</sup> 구체적으로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가혹한 결과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이 계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sup>76)</sup>

한편, PECL 제8장에서는 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이행의 구체적 효과의 형태들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제8:101조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의 경우 그 효과로서 제9장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고 구제수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sup>77)</sup> 다만 제8:108조에 의해서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재협상의 결렬

PECL 제6:111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들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자 일방은 당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일정 시점 및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손익을 당사자들 사이에 공정·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 외 특이한 내용은 당사자 일방이 협의하기를 거절하거나, 협의의 시작은 하였으나 신의칙에 반하여 협의를 중단시킨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

74) 박영복, 전계서, p.182

75) 김상용, 전계서, p.60.

76) PECL Art. 6:111(2).

77) PECL, Art. 8:101(1)(3).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법원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당해 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교섭을 파기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 의해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sup>78)</sup> 다른 국제상거래법 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sup>79)</sup>

전체적으로 PECL은 PICC와 유사한 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PICC와의 구별되는 차이점은 법원으로 하여금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당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파기한 당사자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PECL에서는 법원의 공적 개입을 허용하여 당해 사정변경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80)</sup>

## V. 시사점 및 결론

현대 사회의 유지·발전의 원동력인 계약의 원활한 기능은 계약의 충실한 준수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계약의 불가파기성은 법 기능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일단 맺어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계약법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의 상황이 의무이행시의 상황과 크게 다른 경우, 일방의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체결시의 상황으로 이행의무를 구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법원리로서 계약준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결과 당사자에게 경제적 파산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학적 관점에서는 그 법원리의 관철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계약 조건의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반대되는

---

78) PECL Art. 6:111(3)(c).

79) 심종석·오현석, 전계논문, p.320.

80) 심종석, 전계논문, p.119.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리적인 엄격성은 유지하되, 상무적 측면에서 경제적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후발적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애초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수정·면책할 수 있는 이론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정의의 실현에 부합하는 길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는 예들은 국내의 그것보다 경우의 수가 많을 것이다. 이는 국제무역에 상존하는 거래의 장기성·장기성·위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다면 당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중대한 사정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그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사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묵시적 조항을 포함하는 까닭에, 그 전제조건이 없어지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적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은 그 규율방법과 성립요건 및 적용효과가 각기 상이하다.

한편 CISG, PICC 및 PECL로 대별되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구조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무역상무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내지 실익은 법규의 해석론을 기반으로 실현되는 실무적 관점에서 사정변경 원칙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CISG는 사정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의 개념을 설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및 해제권의 발동이라는 법적·실무적 적용효과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둘째, PICC에서는 우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사정변경과 관련한 Hardship의 구체적인 조항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셋째, PECL은 사정변경원칙을 규정 체계 내에 수용하여 혹여 사정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사정변경 원칙에 관련된 CISG, PICC 및 PECL의 규정의 근본적 법리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CISG에서 PICC 그리고 PECL의 순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리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상거래에서는 각 국간의 제도나 법이론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원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보

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법 자체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상무적 관점에서는 법적 과정 내지 절차뿐만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교섭절차를 통하여 계약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합의하도록 또는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PECL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무적 관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의 이론과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국제거래와 민법이론, 집문당, 2005.
- 지원림, 민법강의, 제9판, 홍문사, 2011.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5판, 삼영사, 2005.
- 김승현, “국제건설계약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25권, 2005.
-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
- 박영복, “현대 계약법의 추이”, 외법논집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 김동훈,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인권과 정의 제244호, 대한변호사협회, 1996.
- 김선국,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기업법연구 제13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오원석·배준일, “면책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2001.
- 오원석·심윤수, “「UNIDROIT Principles 2004」의 변경·신설내용의 개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2005.
- 서완석,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 서정두, “국제조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에 대한 Hardship 조항의 활용”,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7.
- 심종석, “국제계약규범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기준과 법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 CISG, PICC, PECL의 規定과 判決例를 중심으로 -”, 법제연구 제29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정상현,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이론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최현숙,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Hardship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 한낙현, “국제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2010.
- 허해관·한병완,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면책규칙에 관한 일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 半田吉信 外 (共譯), ユルゲン·バセドウ (編), ヨーロッパ統一契約法への道, 法律文化社, 2004.
- 杉浦保友·久保田隆, ウィーン売買条約の実務解説, 中央経済社, 2009
- C. M. Bianca & M. 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 & Milan, 1987.
- S.H. Jenkin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UCC, CISG UNIDROIT Principles: A Comparative Assessment", Tulane law Review, Vol. 72, 1998.
- M. P. Joseph,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1997.
-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 Hyon Sok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he legal doctrine allowing for treaties to become inapplicable because of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ly an "escape clause" that make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of *pacta sunt servanda* (promises must be kept). The practical nee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differ from the established concepts of national contracts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theories under the regim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to a treaty had contemplated for the occurrence of the changed circumstance. It only relates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that were neve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This paper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in addition to Article 7.1.7), PECL Article 6.111(in addition to 8.108). It is time when we should reconsider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viepoint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Key Words: CISG, PICC, PECL, Change of Circumstances, Hardship, Force Majeure, Act of God, Impediment